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5
------	----

2018. 9. 5.  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8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】

-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 9. 5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강태웅)

-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,167명에서 18,239명으로 72명 증원하고자 함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,167명에서 18,239명으로 72명 증원하려는 것임.
- 구체적으로는 ▷ 흥릉바이오, 양재 R&D, 마곡 R&D 등 혁신성장 분야에서 18명, ▷ 성별 임금 고용 격차 해소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분야 13명, ▷ 남북교류 활성화 분야 13명, ▷ 공예박물관 운영, 노후시설 안전과 지진대비 등 인력보강을 위해 13명, ▷ 서울시의 정책결정 보좌와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.

#### 〈정원 조정 내역〉

구 분	총 계	일반직					연구직			별정직		
		소계	3·4급 이상	4급	4·5급	5급 이하	소계	연구관	연구사	소계	4급 상당	5급상당 이하
현 행 (*18.8월)	18,167	10,242	52	232	10	9,948	370	59	311	29	2	27
변경후	18,239 (+72)	10,304 (+62)	53 (+1)	235 (+3)	10	10,006 (+58)	372 (+2)	60 (+1)	312 (+1)	37 (+8)	5 (+3)	32 (+5)

※ 총계에는 정무직(2), 지도직(24), 소방(702), 교육공무원(498)이 포함됨.

구 분	총 계	집행기관	의회사무기구	소방공무원	교육공무원	합의제 행정기관
개정 전	18,167	10,216	300	7,002	498	151
개정 후	18,239	10,278	310	7,002	498	151
증 감	72	+62	+10	-	-	-
사 유		-여성가족정책실 (+13) - 기획조정실 (+1) - 남북협력추진단 (+13) - 경제진흥본부 (+18) - 안전총괄본부 (+5) - 도시재생본부 (+1) - 시장단 (+5) - 서울공예박물관 (+6)	- 입법담당관 (+4) - 언론홍보실 (+1) - 의사담당관 (+1) - 예결위원회 (+1) - 별정직(+3)			

※ 기획조정실장(국가직) 별도

## 나. 인력증원 주요내용

- 서울시는 민선 7기 주요 시정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 급히 요구되는 인력 72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.
- 구체적으로 신산업단지 거점(홍릉바이오, 양재R&D, 마곡R&D, SETEC, G밸리 등)으로 선정한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진흥본부에 '거점성장추진단'을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최근 이슈가

되고 있는 서울페이 추진인력, 가맹거래조정센터에 필요한 인력 18명을 보강할 계획임.

-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저성장기조 확산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, 지역 내 경제성장도 한계에 봉착하였음. 특히,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이 10.1%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<sup>1)</sup>.
-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 경제침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내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 혁신성장 분야를 선정해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 분야에 근무할 인력을 증원 요청하고 있음.
- 해당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잃어버린 서울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는데 일정한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임.
- 또한,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개선과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등 여성노동 환경개선과 성희롱·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13명 증원을 요청하였음.
- 아이돌봄담당관 신설과 성평등노동, 젠더폭력 예방 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증원을 통한 행정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.

---

1) 한국은행, 통계청

- 다만, 신설되는 조직이나 인력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의 중·장기과제를 발굴하고, 왜곡된 성관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양성평등 문화를 개선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- 이 밖에도 ‘남북협력추진단’ 신설에 필요한 남북교류 활성화 인력 13명, 노후 시설 안전과 지진대비,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등 주요 핵심 과제 추진 인력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등 13명에 대한 증원도 요청하였음.
- 4·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‘남북협력추진단’ 운영과 사업준비에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임.
- 그러나, 국제적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북미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, 특히,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지방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, ‘국’단위 조직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- 또한,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5명의 보좌인력,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력 10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5명의 별정직 인력

(4급2, 5급 3)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임.

- 시정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조언과 보좌역할을 수행할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.
- 다만, 이미 시장실에는 민생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기획보좌관, 정책 및 기획비서관 등 20명의 보좌인력이 근무 중에 있으며, 이들이 보좌영역을 넘어 행정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5명의 별정직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.
- 개정안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증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,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 추진업무를 담당할 별정직 보좌인력(3명)과 지방분권지원팀 신설에 따른 인력(4명), 의정활동 영상촬영과 제작인력(1명), 예산안·결산 검토를 위한 인력(1명) 등임.
- 행정안전부에서 마련 중인 지방분권 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분권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해 지방분권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해 대정부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정활동 홍보인력과 예산안·결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의회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, 집행부 견제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음.

## 다. 인건비의 증감

- 개정안에 따르면,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과 연구직 64명이 증원되고, 별정직 8명이 순증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증원되는 72명의 인건비 소요는 연간 64억 2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됨.

### 〈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 산정내역〉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	비 고
합 계	6,420,94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직(+62명) : +5,394,828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3급(+1) : 125,798 × 1명 = 125,798</li> <li>▷ 4급(+3) : 107,324 × 3명 = 321,972</li> <li>▷ 5급(+10) : 116,872 × 10명 = 1,168,720</li> <li>▷ 6급(+22) : 85,986 × 22명 = 1,891,692</li> <li>▷ 7급(+25) : 73,394 × 25명 = 1,834,850</li> <li>▷ 8급(+1) : 51,796 × 1명 = 51,796</li> </ul> </li> <li>○ 별정직(+8명) : +838,622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4급상당(+3) : 107,324 × 3명 = 321,972</li> <li>▷ 5급상당(+4) : 116,228 × 4명 = 464,912</li> <li>▷ 8급상당(+1) : 51,738 × 1명 = 51,738</li> </ul> </li> <li>○ 연구직(+2) : +187,490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관(+1) : 113,786 × 1명 = 113,786</li> <li>- 연구사(+1) : 73,704 × 1명 = 73,704</li> </ul> </li> </ul>	'18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

- 올해는 정원조례 개정시기와 채용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인건비 소요액의 25% 이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약 16억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함.
- 행정안전부는 2018년 서울시 기준인건비로 1조 7,323억원(기준인력 20,205명)을 책정하였으며, 이 중 서울시는 당초 1조 6,867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음.

- 올해 1월(373명)과 6월(23명) 두 차례 정원을 확대하면서 약 300 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연초 예상보다 초과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, 금번 증원을 통해 연말까지 약 1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경우 남은기간 인건비 여유 규모는 약 140억원으로 추정됨.
- 연내에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채용시기 등을 감안 하면 올해 서울시의 인건비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임.

## 라. 장기적인 인력·정원관리 필요성

- 서울시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」 제23조2)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‘중기인력운용계획’을 수립하고 있음.
- 2017년 11월 수립된 「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2018~2022)」에 따르면, 향후 5년간 모두 1,31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, 2018년에는 전체 정원을 18,294명의 범위에서 관리할 계획임.
- 이번 정원 개정사항을 포함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55명 적은 수준에서 정원을 관리하게 되며, 각 분야별 세부 인력변동 내역은 중기인력

2) 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운용계획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〈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감 내역〉

구 분	계	순증(a-b)	증원(a)	감원(b)
계		1,313	1,532	219
2017.10	17,771	-		
2018	18,294	523	533	10
2019	18,368	74	258	184(교통방송 법인화)
2020	18,626	258	279	21
2021	18,861	235	239	4
2022	19,084	223	223	-

- 한편,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및 사업계획, 업무량 증가 등을 중·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하고,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임.
- 따라서, 공무원 인력계획은 행정수요 변화나 주요 정책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중·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에서 신중히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.

마. 종합의견

-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 주요 핵심과제의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관련

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2명 증원을 요청하였음.

-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공조직의 특성상 인력증원이 곧바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점과 고용탄력성이 낮은 문제 등 향후 조직관리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-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지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과정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, 다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큼.
- 또한, 순환보직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습득된 후에 전혀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업무 노하우가 조직내에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력 운용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.
- 특히, 11월 2단계 조직개편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급히 관련 인력을 증원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,167명”을 “18,23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0,216명”을 “10,278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300명”을 “31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“18,167”을 “18,239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“10,242”를 “10,304”로 한다.

같은 표 3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급	18	8		1	9	
----	----	---	--	---	---	--

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급	235	142	16	7	66	4
----	-----	-----	----	---	----	---

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“9,851”을 “9,909”으로 한다.

같은 표 별정직 계의 계란 중 “29”를 “37”로 한다.

같은 표 4급상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급상당	5	3	2			
------	---	---	---	--	--	--

같은 표 5급상당 이하 소계의 계란 중 “27”을 “32”로 한다.

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“370”을 “372”로 한다.

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구관	60	5		32	23	
-----	----	---	--	----	----	--

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“311”을 “312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8,167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<u>10,216명</u></p> <p>2.~3. (생략)</p> <p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<u>300명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b>【별표 3】</b>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18,239명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10,278명</u>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310명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【별표 3】</b>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 사무처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<u>18,167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<u>10,242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3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<u>17</u></td> <td><u>7</u>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232</u></td> <td><u>140</u></td> <td>16</td> <td>7</td> <td><u>65</u>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<u>9,851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9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계	<u>18,167</u>						정무직계	2						일반직계	<u>10,242</u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3	18		1	3	1	3급	<u>17</u>	<u>7</u>		1	9		3·4급	5	5					4급	<u>232</u>	<u>140</u>	16	7	<u>65</u>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<u>9,851</u>						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 사무처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<u>18,239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계</td> <td><u>10,304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3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<u>18</u></td> <td><u>8</u>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<u>235</u></td> <td><u>142</u></td> <td>16</td> <td>7</td> <td><u>66</u>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<u>9,909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소계</td> <td>9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계	<u>18,239</u>						정무직계	2						일반직계	<u>10,304</u>						1급	7	6	1				2·3급	23	18		1	3	1	3급	<u>18</u>	<u>8</u>		1	9		3·4급	5	5					4급	<u>235</u>	<u>142</u>	16	7	<u>66</u>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<u>9,909</u>						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<u>18,167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<u>10,242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3	18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<u>17</u>	<u>7</u>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232</u>	<u>140</u>	16	7	<u>65</u>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<u>9,851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<u>18,23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계	<u>10,304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3	18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<u>18</u>	<u>8</u>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<u>235</u>	<u>142</u>	16	7	<u>66</u>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<u>9,90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별정직 계	29						별정직 계	37					
4급상당	2	1	1				4급상당	5	3	2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7	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
연구직 계	370						연구직 계	372					
연구관	59	5		32	22		연구관	60	5		32	23	
연구사	311						연구사	312					
지도직 계	24						지도직 계	24					
소방공무원 계	7,002						소방공무원 계	7,002					
소방준감	5	4		1			소방준감	5	4		1		
소방정	29	2		27			소방정	29	2		27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
소방령 이하 계	6,967						소방령 이하 계	6,967					
교육공무원 계	498						교육공무원 계	498					